

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안 건
제 출 년 월 일	2001. 3. 20. (제 1 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

제 출 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강 문 규
제출년월일	2001. 3. 20

1. 의결주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조세제도개편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적 유인제도로 유도하고자 함

우선은 현행환경관련 각종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 비친화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의 개편과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편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자문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개편원칙

-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의 환경개선 효과 제고
 - 환경질의 개선과 기업의 환경기술·투자에 인센티브 강화
-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
 -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전입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세의 세수 중립성(Tax Revenue Neutrality) 유지

(별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

2001. 3. 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업과환경분과위원회

목 차

I. 정책목표	1
II. 개편원칙	2
III. 개편방안	4
1. 과세방안	4
2. 개편방안	7
IV. 세부 개편내용	8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편	8
2. 에너지세제의 개편	16
3.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개편	20
4. 조세특례제도 및 보조금제도의 개편	24
V. 추가 고려사항	28

I. 정책목표

□ 환경·경제의 통합 제고로 지속가능발전 실현

- 환경질의 개선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세제도 개혁
 -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
- 환경정책과 재정정책, 산업정책, 농업정책 등 기존 경제정책과의 연계 강화

□ 고비용·저효율 경제에서 저비용·고효율 경제사회로 전환

- 에너지, 물, 토양 등 자원의 공급위주 정책의 추진은 자원 낭비와 이로 인한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초래
 - 다량의 자원소비와 폐기물 발생에 기반한 산업구조는 환경오염 부하, 경제사회의 효율성 저하, 국제경쟁력 약화 야기
-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혁으로 자원의 사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사회체제(Highly Productive Socioeconomy)를 구축

□ 기술개발 촉진과 환경투자 확대 유인

- 향후 공해유발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이나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촉진 필요
 - 직접규제정책은 생산자들의 규제기준에 대한 순응만을 유도할 뿐, 새로운 오염통제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제공 못함

- 환경세는 덜 오염유발적인 제품과 생산공정의 개발로 제품의 생산비를 인하시키고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
- 또한 민간부문의 환경개선 투자를 촉진시키는 유인으로 작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교육투자의 확대 등 향후 정부의 지출규모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
-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환경세가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작용

II. 개편원칙

□ 세수의 재순환(recycling)으로 경제부담 최소화

-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수를 조세수입중립원칙(tax revenue neutrality)으로 재순환시켜, 환경질의 개선과 조세의 초과부담을 경감을 동시에 추구함 (환경세의 이중배당 효과)
- 환경세 세수를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의 인하, 사회보장분담금의 경감 등으로 사용하여 경제부담을 최소화

□ 불공평 부담의 개선

- 환경세는 부과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득분배를 불공평하게 할 수 있음

- 환경세 부과로 인한 전기료, 난방료 등의 가격인상은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킴
- 환경세 도입으로 소득의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최저소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소득 손실을 보전함

□ 목적세화 지양과 재원의 효율성 제고

- 환경세는 환경개선사업의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경질의 개선, 즉 오염경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함
 - 환경세수가 환경개선사업에 목적세화되면, 환경세수는 오염자의 오염통제비용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소지 많음
 - 이것은 오염자의 오염통제 정도에 대한 결정을 왜곡시키므로 오염통제에 관한 비효율적인 보조가 됨
- 환경세의 세수는 목적세보다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개선 투자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예산의 운용도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근거로 일반세원에서 조달

□ 세제의 단순화

- 현재 우리 나라의 환경관련 세제는 본래의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되어 많은 종류의 명칭을 사용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음
- 향후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혁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세제

- 를 정비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징세사무의 복잡화, 징세비용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국제환경문제에의 적극 대응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구환경보전과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필요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도입

□ 인센티브 활성화

-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기존세제의 개편, 보조금·조세감면제도 등의 개편은 기업의 환경기술 및 환경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를 저해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과 또는 보조금 폐지

III. 개편방안

1. 과세방안

□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환경세 과세대상 (tax base)으로 선정

- 또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자원 등은 자원의 이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환경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과세대상	세금(과세방식)	대상품목(例示)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세 (가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유연탄, 무연탄, LNG, LPG 등
	탄소세 (가격)	탄소 함유 제품
수질오염물질	수질환경세 (배출량, 사용량, 가격)	· BOD 또는 COD, SS, 카드뮴 등 · 하수도 · 비료, 살충제, 펄프, 합성세제, 샴푸, 린스, 비닐백, 기타 화학제품 등
폐기물	폐기물환경세 (가격, 배출량)	· 재활용이 어려운 최종제품 (예: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품목) · 포장, 생활쓰레기, 의료쓰레기, 산업용쓰레기, 기타 유해폐기물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예: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
자원이용	자원이용세 (사용량, 가격)	· 지하수, 상수도, 지하자원 등

- 과세 대상품목과 환경개선 효과와의 밀접한 연관관계(linkage)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대상을 선정
 - 과세대상 단순화로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최소화
 - 과세방식은 오염물질 배출량 및 자원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와 사용제품의 가격에 반영하는 종가세 형태를 취함

□ 과세단계

- 대기·수질환경세, 탄소세 등은 소비 혹은 수입단계에서 과세
 - 폐기물환경세는 판매 혹은 수입단계, 자원이용세는 소비 혹은 수입단계에서 과세

□ 세율

- 처음에는 세율을 낮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처음에는 2~3%선에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유도 (매년 1~2%씩 인상)
- 또한 기업의 환경투자 유도와 소비형태 변화를 위해 향후 20~30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중간에 환경목표 실행 체크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효과 감소의 조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과세주체

- 대기환경세, 탄소세, 폐기물환경세 등은 국세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지구적인 규모에서의 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
- 수질환경세, 자원이용세는 오염자부담원칙의 실현과 환경기초시설의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각 지역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지방세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지방세의 경우 환경세의 세율이나 과세표준이 각 지역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므로 환경세의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각 지역에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수의 용도

- 환경세의 세수는 세수중립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 국제 경쟁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역(-)의 영향을 최소화함
- 환경세의 세수는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를 경감하는데 사용하거나, 연금불입액 세액공제 등 세금경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사용하여 경제부담을 최소화함

2. 개편방안

부 문	현 행	개 편 방 안	
		단기적	중장기적
대기 수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수질환경세로 전환	탄소세 도입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환경세로 전환	
	예치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	
자원 이용	지하수	종량세(자원이용세)로 전환	용수, 농업, 에너지 부문 보조금 축소/폐지
	물과 전기	가격 현실화, 보조금 폐지	
교통 (자동차)	보유과세	축소/폐지	
	운용과세	주행세 확대	
조세특례	환경침해 항목(예) (101, 102, 105, 106조)	축산업 지원, 삼림개발 및 유류사용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의 축소/폐지	조세특례제도의 전반적 개편
	환경개선 항목(예) (25, 30, 106, 108, 118조)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재활용 등에 대한 조세 특례 확대	

IV. 세부 개편내용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제도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부과
- 1996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제도가 시행(농도규제)
 - 그러나, 시설수 및 오염물질배출량이 점차 증가되어 초과부과금제도만으로는 환경개선 효과가 적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제도를 1997년 1월 1일 도입
- 초과부과금 부과항목은 대기에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0종이며, 수질에 BOD 또는 COD, 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17종
 - 기본부과금부과대상은 대기에 2종(먼지, 황산화물)이며, 수질에 2종 (BOD 또는 COD, SS)
-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내에서도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여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
 - 그러나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농도기준만 지키면 배출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배출부과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에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동 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

- 대기배출부과금은 종별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총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되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지 못함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융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m²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시설물과 차량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이므로 정책수단과 정책대상간의 연계성이 부족
- 경유자동차부담금도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주행을 통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했는가를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성을 내포

-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오염유발계수를 설정함으로써 오염물질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배기가스청정기의 설치를 위한 노력이나 이 같은 시설이 설치된 차종을 구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유인하지 못함
-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질의 경우 용수량으로 요율산정 근거를 삼고 있어서 지방세법의 사업소세, 하수도 사용료와 이중부담문제를 야기
- 현행 수질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서는 개별시설물들의 오염유발계수 대신 업종별 오염유발계수를 사용
 - 이 경우 행정비용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동일한 업종의 경우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어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거나 새로 설치할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함

□ 폐기물예치금

-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 현재 폐기물예치금은 종이팩 등 6개 품목 12종을 대상으로 단위당 예치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수·재활용 정도에 따라 예치요율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
- 1999년에 부과된 예치금은 총 293억 원으로서 267억 원이 납

부되었고 이 가운데 반환액은 128억원으로 43.6%의 반환율을 보이고 있음

- 업종별 반환실적을 보면 금속캔, 유리병, PET병, 전지, 타이어가 50% 이상이며, 종이팩, 윤활유, 가전제품의 반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예치요율은 실제로 소요되는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실상 폐기물에 대한 회수·처리를 포기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현행 예치금제도의 징수·반환절차가 신고 → 납부고지서 발급 → 납부 → 반환 청구서 제출 → 심사 → 반환단계 등 매우 복잡하여 행정적·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고, 예치금의 징수·반환에 시차(time-lag)가 존재
- 재활용시장도 상당히 낙후되어 예치금제도가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처리비용을 제조·수입업자에 부담시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음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요율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화장품 용기 등 12개 품목 32종
 - 껌, 합성수지는 증가세 성격이고 이 외에는 종량제적인 성격

- 그러나, 폐기물부담금의 대상품목이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음
 - 폐기물부담금의 품목들을 보면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만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상당수 포함
 - 부담요율이 실처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회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

- 합성수지의 경우 부담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예: PET병, 과제제품 등)에 대해서도 부담금이나 예치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중부담의 문제를 야기

□ 수질개선부담금

-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로부터 판매가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의 수질개선시책, 먹는물의 수질검사비용,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에 사용

- 그러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청량음료 및 주류에는 먹는샘물과는 달리 낮은 부담요율이 책정되고 있으므로 품목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담요율의 현실화가 요구

- 부과방식도 사용한 지하수의 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에 기초로 하고 있어 비록 지하수를 취수하였다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정책과 정책대상간의 연계성이 부족

2) 개편방안

-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는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목적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규제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원래의 환경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

- 대기배출부과금의 경우 에너지 사용에 **대기환경세**(연료세의 형태)를 부과하고 아울러 대상품목을 확대
 - 연료세는 세원이 명확하고 세액의 산출에 무리가 없으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의 명확성과 예측성을 보장하여 준다는 점에서 대기배출부과금제도보다 우수

 -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서 **수질환경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대상품목을 확대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시키고 하수도 사용료와 이중부담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배출부과금제도와 통합하여 **대기환경세**(연료세의 형태) 부과
 - 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

 - 수질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수질환경세**)에 포함시키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

 - 경유자동차부담금은 **대기환경세**를 부과하여 경유의 수요 감축을 유도

- 경유에 대한 과세강화는 물가인상이나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하며, 과세 강화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체적인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고려하여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줄이도록 노력
-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흡수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예치금제도는 환경세의 문제점인 국제경쟁력 문제 및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적극 장려할 필요
 - 현재 명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 제도를 좀더 확장하고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 아울러, 효율적인 회수체계의 확립과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소비자나 중간생산자에게 일반소비세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환경세**로 전환하고 과세 대상품목을 확대
- 폐기물환경세는 세입증대 효과를 유발하고, 대체품목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경우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 환경에 위해한 각종 1회용 제품용기, 각종 합성수지제품, 비료, 살충제, 각종 세제류, 기타 유해화학물질 등을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

경제적 유인제도 개편방안

종 류	개 편 내 용	
배출부과금	대기	· 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대기환경세) · 대상품목 확대
	수질	· 오염물질 배출량 및 수질오염 제품에 부과(수질환경세) · 대상품목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 대기환경세로 통합
	수질	· 하수도사용료(수질환경세)에 포함
	경유자동차	· 대기환경세로 통합
폐기물예치금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흡수 · 대상품목 조정 및 확대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환경세로 전환 · 대상품목 조정 및 확대	
수질개선부담금	· 지하수취수량에 비례하여 부과(자원이용세)	

- 수질개선부담금제도는 지하수 취수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자원이용세**로 전환
 - 현행과 같이 제품에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업자에게 취수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수입생수의 경우 국내업체와의 경쟁력차원에서 판매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2. 에너지세제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에 과세되는 세금은 주로 화석연료에 부과되고 있음
 -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그리고 특별소비세는 등유, LNG 및 LPG에 부과
 - 교통세 1994년에 도입되었고, 동 세수는 교통관련 SOC 투자를 위해 도로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며 특별소비세의 세수는 일반회계로 편입

- 현행 에너지세제는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低에너지 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에너지소비의 GDP탄성치는 1980년대 초반에만 '1'보다 작을 뿐,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1'보다 크고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대도시 대기오염의 절반은 공장매연,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
 - 그러나 공장용 주연료인 중유(벙커C유)를 비과세하고, 자동차 공해의 50%를 차지하는 경유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과세
 - 에너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중의 하나는 에너지가격에 대기오염 피해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
 - 그 결과 에너지는 사회적 적정수준 보다 과다하게 소비되고 대기오염물질이 자정능력 이상으로 과다 배출되어 대기

오염 피해를 유발하고 누적되어 감

- 재정경제부는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 등유, 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율을 2001. 7. 1부터 2006. 7. 1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 상향조정(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 또한 중유와 석유화학제품 제조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상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표 참조)
- 재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에너지원간의 가격구조 왜곡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
 - 에너지원간 세율조정은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LPG 등의 상대가격 조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가격조정을 통한 환경비용의 내재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단, 중유에 대한 신규과세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 에너지 소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소비하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용량 범위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오염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소비량에 과세하는 대기환경세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
 - 만약 대기환경세가 부과된다면 전반적인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이 바뀌게 되므로 총체적인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로의 소비대

체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

-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기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실정
 - 그 결과 전반적인 에너지가격 수준이 낮아 에너지는 사회적 적정수준 이상으로 소비되어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킴
 - 또한 오염부하가 높은 에너지의 상대가격이 적정수준 보다 낮아 에너지소비 구조도 이러한 에너지 위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

세율조정

(단위 : 원/ℓ)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유	중유
현행 (2000.7)	상대가격비	100	47	26	40	22
	소비자가격	1,279	604	337	517	276
	특소·교통세	630	155	23	60	-
2001.7	상대가격비		52	32	43	22
	소비자가격		663	409	548	280
	특소·교통세		185	67	82	3
2002.7	상대가격비		56	38	45	22
	소비자가격		722	480	579	283
	특소·교통세		234	132	107	6
2003.7	상대가격비		61	43	48	22
	소비자가격		782	552	610	287
	특소·교통세		276	189	131	9
2004.7	상대가격비		66	49	50	22
	소비자가격		841	624	641	291
	특 소 세		319	245	154	11
2005.7	상대가격비		70	54	53	23
	소비자가격		900	695	672	294
	특 소 세		362	301	178	15
2006.7	상대가격비		75	60	55	23
	소비자가격		959	767	703	298
	특 소 세		460	411	231	20

자료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2) 개편방안

- 향후 대기오염 관련 환경비용을 내부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 에너지에 대한 세율조정 등 대폭적 수정 필요
 - 대기환경세를 도입하면 대기오염 개선 효과 측면에서 휘발유, LPG, 경유 등 화석연료의 전반적인 가격의 상향조정이 필요
 - 증대되는 세수입은 대기오염저감설비 보급에 대한 지원, 법인세 감면, 자동차 보유세, 예컨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주행세 도입 등에 사용
- 또한 국제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환경관련 재원의 조달이나 교통세의 역할을 담당시킴
 - 2004년부터 폐지되는 교통세 세수의 재원손실을 탄소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입으로 충당
- 탄소세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우리의 탄소세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탄소세 도입시에 가능하면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에서(예컨대, 원유환산 배럴당 \$5 이하) 탄소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탄소세의 부과대상품목은 가능하면 국내환경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제품부터(예: 수질오염유발제품,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유황배출제품, 폐기물, 분진, 배터리, 기타 유독물질배출제품 등), 국제경쟁력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그리고 가격탄력도가 높은 제품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GAK

- 탄소세의 도입방식은 제1차 에너지제품(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사용 혹은 수입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이 그러한 에너지제품을 원료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2차적 제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절약적임

- 또한 그 부과대상품목이 이미 기존의 간접세를 안고 있을 경우에는 그 세에 업혀서(piggy-backed 형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탄소세 부과대상 품목이 이미 간접적으로 탄소세의 효과를 나타내는 세금(특소세, 자동차세)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세율조정이 필요함

3.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우리나라 환경관련 지방세제는 자동차세, 지방주행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음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교육과세가 30% 부과
 - 자동차세는 취득, 보유 및 이용의 3단계로 부과되며 총세목은 8개나 됨
 - 국세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1時)
 -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도 취득시에 부과(1時)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에 대한 과세이며, 교통세(휘발유 특소세)는 이용시에 부과
 - 자동차세는 규칙적으로 부과하며, 교통세는 수시로 부과
- 지방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적 성격의 조세임
 -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이며, 납세의무자는 정유업자·유류수입업자 등(휘발유, 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임
 - 과세표준은 “교통세액”이 되고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임(2001.6.31이전까지 1000분의 32)

-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건물·선박·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오물처리 시설이나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
 - 세율은 500만원 이하 0.06% ~ 5,000만원 초과 0.16%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채수영업자, 지하자원채광자 등이며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임
 - 세율은 발전용수의 경우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1원, 지하수의 경우 음용수 1m³당 100원, 온천수 1m³당 50원, 기타 지하수 1m³당 10원이며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임

- 현행 환경관련 지방세제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세의 경우 보유과세(소유) 비중이 크고 운용과세(소비) 비중이 낮아 환경개선 유인효과 미흡

- 지방주행세의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세제이나 현재의 세율로는 그 효과가 미흡
- 지하수 사용에 있어서 지역개발세(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와 수질개선부담금(먹는샘물)로 이원화되어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세율도 낮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도 미흡

2) 개편방안

- 자동차세율을 대폭 인하하되 보유과세를 줄이고, 주행세 등 운용과세를 대폭 확대
 - 자동차세제에 대한 개편이 어려운 점은 교통세가 중앙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자동차체는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임
 - 최근 중앙정부는 가솔린에 대한 지방세의 도입을 동의하였는데, 이것은 가솔린과 디젤의 세율을 올리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개편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
 -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율을 차별화하는 등 자동차세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 지방주행세의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 자동차의 주행억제 및 자동차 소유자의 배기가스청정기 설치를 유인하며 이 같은 기기가 설치된 차종 구입을 유도하는 효과

□ 지방세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중 환경관련 부문은 수질환경세와 자원이용세로 전환하여 세제의 간편화 도모

- 지역개발세와 수질개선부담금을 자원이용세로 통합
 - 지역개발세중 지하자원 채광량에 의한 과세율을 인상

4. 조세특례제도 및 보조금제도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조세특례제도는 조세의 감면·중과 및 제한에 관해 규정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환경에 위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음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들도 존재

-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줄수 있는 조항들(例)
 - 축산업에 대한 지원(조세특례제도 제101조) :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축산업소득의 20% 소득공제
 - 산림개발에 대한 지원(제102조) : 영림계획,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10년 이상 조림한 산림 등의 벌채·양도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도시철도건설용역, 농어업·축산업·임업·어업용기자재 등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 :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 농·어업용 석유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

- **환경보호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들(例)**
 -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조세특례제도 제25조)
 - 당해년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액의 15%를 손금산입(동제도 제30조)
 - CNG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동제도 제106조)
 - 재활용폐자원의 매입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간주, 공제(제108조)
 - 태양에너지 이용 기기제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제118조)

- 또한 기술개발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R&D에 대한 조세감면은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 미침**
 -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도 제9조), 신기술사업화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동제도 제11조) 등

- 환경에 위대한 보조금은 일례로 1998년도에 용수 부문(상하수도, 공업용수 및 산업폐수, 농업용수 및 축산폐수)의 경우에 정부의 직·간접 보조금은 약 8조 9천억원 규모에 달함 (KEI 추정치)

- 용수 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및 농업관련 보조금의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물과 전기 등 공공재(public goods)의 가격정책도 보조금 정책과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물과 전기는 국가독점으로 공급되며,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 물과 전기의 가격에 포함됨

-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낮은 물가격이 수자원의 낭비 및 고갈을 초래
 - 어느 수준까지 물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환경에 위대한 보조금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생산비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전기의 경우 자본이득율(rate of return to capital)이 최적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전기가격은 사용자의 형태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어서 사용자간에 보조금의 차별화도 존재

2) 개편방안

- 환경에 위대한 보조금을 감축함과 동시에 조세중립(tax revenue neutrality) 원칙하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경제왜곡적인 조세의 세율을 인하
 - 또한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용에 동 세수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꾀하거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사용
 - 그러나, 기존의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 환경에 위대한 보조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감축을 위한 적절한 전략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 환경보호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조금 및 조세감면은 유지·확대

- 환경기술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도 환경세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함
 - 특히 농업오염과 같이 세금의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그 오염을 경감하는 기술개발의 투자에 대해 환경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전체 자동차의 연료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

 - 그리고 기업의 환경오염경감 시설의 투자 및 기술개발(R&D)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속감가상각 허용 등도 환경오염을 감소하는데 기여
- 환경과 직결되는 물 및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의 체계도 대폭 개편
- 물의 경우 예컨대, 생수의 가격만 조세를 통해서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 가격 전체가 상향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함(즉, 수자원 요금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이 필요)

 - 전력가격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가격기제가 변화될 것이므로 차제에 적정한 전력가격기제를 구조개편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 또한 그간의 부문간 교차보조행위 등을 지속가능원칙에 적합하도록 유해보조금을 제거(일례로 대표적인 유해보조금은 심야전력기기를 들 수 있음)
 - 새로운 세수확대를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5. 추가 고려사항

□ 범정부적 환경세위원회(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Tax Reform Committee)의 구성·운영

- 환경, 에너지, 재정, 농업, 산업분야 등의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경제왜곡 최소화, 환경세의 효율성 증대방안 등을 논의
- 세계개편의 단기적 추진안과 중장기적 추진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 사회의 환경감시 기능 강화

- 불참자에게 부당이익을 환수하거나 penalty를 주는 방안 강구
-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인

□ 기존 규제의 합리화 및 지원강화

-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환경투자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합리화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체계로 개편
- 아울러 제도의 정비와 단순화를 도모